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2014년 8월 5일(화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과 장 김영찬(043-870-5500),
연구관 배진석(043-870-5504)

범부처 인증제도 감축으로, 기업의 인증부담 해소
- 관계부처 합동 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 확정 -

□ 정부는 '14. 8. 5(화) **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**(국무총리 주재,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)에서 **관계부처* 합동**으로 **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**을 확정·발표했다.

*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미래창조과학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25개 인증제도 운영 부처

□ 오늘 확정된 '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'은 「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('14. 3. 20.)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·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이다.

○ 이를 위해,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*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**하여 총 41개(약 30%)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한다.

* 부처내 및 부처간 통합 사례
- ▸국토부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"물류전문기업인증"으로 통합하여 3개 인증 감축 (①우수화물운수업체, ②우수물류창고업체, ③종합물류기업, ④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)
- ▸해수부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"우수수산물인증"으로 통합하여 7개 인증 감축 (수산물품질인증 등 8개 인증을 '친환경수산물인증" 등 3개로 통합 후 최종적으로 단일화)
- ▸안행부의 '개인정보보호인증과'와 방통위의 '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'을 "개인정보보호관리인증"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 감축

** 폐지 사례
- ▸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
- ▸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

○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(KS)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*하고,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**하며,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*** 할 계획이다.

*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('14.6월 개정안 마련)으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('14. 12.)
- ▸환경부, 노동부, 국토부, 산업부가 발굴한('13.8월) 108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을 완료.('14. 3.)

**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(GAP)인증의 경우, 기존에 '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', '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', '인증심사'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'인증심사'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여,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.

***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,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.

□ 또한,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큰 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·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·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.

□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확정을 통해,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하고,

○ 한국산업표준(KS)인증과 같이 사후 관리할 경우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참고1.「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배진석 연구관(☎ 043-870-5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「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」

I 현황 및 문제점

1. 인증제도 현황

□ **認證**이란 제품·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**적합함**을 **평가·증명**

* 인증, 형식승인, 검정, 지정,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

○ 보건·안전, 환경보호,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

보건(식품)	안전(제품)	환경보호	산업육성
유기농 식품	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	건축물	태양광 풍력

□ **法定인증제도**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**의무인증***과 **임의인증****으로 구분

* 의무인증 : 안전·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

** 임의인증 :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(우선구매 등) 부여

○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(의무 70개, 임의 139개) 운영 중

(25개 부처, 124개 법령)

<부처별 인증제도 현황>

연번	소관부처	등록 인증수	유형		연번	소관부처	등록 인증수	유형	
			의무	임의				의무	임의
1	산업통상자원부	34	14	20	14	기상청	3	1	2
2	국토교통부	34	15	19	15	안전행정부	3	1	2
3	해양수산부	24	8	16	16	조달청	3	0	3
4	농림축산식품부	20	3	17	17	공정거래위원회	2	0	2
5	환경부	15	10	5	18	방위사업청	2	0	2
6	산림청	13	2	11	19	중소기업청	2	0	2
7	미래창조과학부	11	2	9	20	관세청	1	0	1
8	식품의약품안전처	7	4	3	21	교육부	1	0	1
9	문화체육관광부	7	3	4	22	국가정보원	1	0	1
10	소방방재청	7	4	3	23	농촌진흥청	1	0	1
11	보건복지부	7	0	7	24	방송통신위원회	1	0	1
12	고용노동부	5	2	3	25	여성가족부	1	0	1
13	해양경찰청	4	1	3	합계		209	70	139

* [출처]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에 각 부처가 등록한 자료(2014)

2. 문제점

□ 기업에 부담이 되는 임의인증 급증

○ 임의인증은 2000년 대비 330% 증가

○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위해 다수 인증 획득

<법정 인증제도 수 연도별 변화>

구분	2000	2010	2014	증감 (2000년 대비)
임의인증	32	98 (206% ↑)	139 (42% ↑)	330%↑
의무인증	40	57 (43% ↑)	70 (23% ↑)	75%↑
계	72	155 (115% ↑)	209 (35% ↑)	190%↑

□ 유사.중복 인증으로 현장애로 가중

○ 동일품목에 유사인증을 추가로 받는 불편

▶ 사례) 물류기업대상 우수화물운수업체 등 4개 유사인증 운영 중(국토부)

○ 인증기준 상이, 과도한 인증절차로 인증 비용 증가

▶ 사례) 전자파적합성 인증기준이 상이하여 중복시험(미래부 등 8개 부처)

□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체계 미흡

○ 인증제도 신설 또는 기존 제도의 존속·개선 여부를 종합적·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

◇「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('14.3.20)」에서 인증으로 인한 기업 애로 호소(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이사)

△ 제품마다 유사한 여러 인증 획득, △ 인증마다 고가의 비용 소요

Ⅱ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 방안

1. 기존 인증제도 정비

□ **(임의인증 통폐합)**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**41개(약 30%) 감축**

① 유사인증 간 **통합 : 23개**(개별부처 20개, 부처 間 3개)

예시)

구분	현행	개선
품질	①물류표준설비인증, ②지능형 로봇품질인증, ③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(이상 산업부), ④순환골재 품질인증(국토부), ⑤목재제품 품질인증(산림청)	KS인증에 통합
물류	①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, ②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, ③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, ④종합물류기업인증(이상 국토부)	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

② 실효성 상실 인증은 **폐지 : 12개**

예시) 연구관리우수기관(미래부),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(산업부/국토부) 등

③ 국제적으로 민간자율 인증은 **민간 전환 : 6개**

예시) 품질경영체계(ISO 9001), 환경경영체계(ISO 14001) 인증 등

□ **(비용·시간 절감)** 인증기준 일치화, 심사절차·인증품목 최소화

① 인증기준의 국가표준(KS) **일치화 및 상호 인정**

* 인증기준 DB 구축('14.12월) 후 KS일치화 여부 및 유사·중복 전면 검토('15.6월)
「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도입 방안('14.5.8 국가정책조정회의)」과 연계 추진

② 인증 **심사절차 간소화* 및 대상품목 축소****

* 시험통합, 구비서류 감축, 신고절차 간소화(3→2단계) 등
**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 대상 품목 축소(45→40개) 등

③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 **최소화**

*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 허용, 인증가점 축소 등('14.9월)

2.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

□ **(신규인증제한)** 규제영향분석서에 “인증제도” 관련항목을 추가하여 **신규 인증**에 대한 **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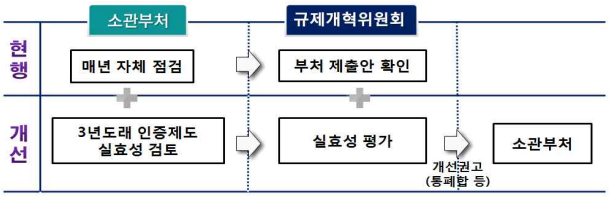
○ 인증품목·기준 및 절차 등을 심층 분석하여 **유사·중복 방지**

○ 신규 인증 도입시 **기존 인증 정비 병행**

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'14.12월) 및「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」개정('15.2월)

□ **(사후관리)** 부처별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존속 필요성 등 **3년마다 제도 실효성 검토 의무화**

* 인증제도 실효성 평가지침 마련('14.12월)



3.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

□ **(국가인증통합시스템 구축)** 모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('14.12월 시범운영)

○ 인증 정보 현황, 인증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**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활용**

□ **(인증콜센터)** 인증정보 제공, 불편사항 건의·개선하는 **오프라인 소통공간**으로 인증·표준 **콜센터(1381, '14.3월) 활성화**